

사업단장 및 책임자 변경 처리

관련 규정

- 현 규정상 변경 시 승인이 필요한 『사업단장』의 개념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사업단장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근거규정 : 대학 특성화 사업(CK) 관리운영규정 제 31조

변경 절차

- 사업단장의 정의는 사업 수행 책임자뿐 아니라 지역 선도대학사업의 선도대학 총괄책임자와 특성화 우수학과의 사업 책임자를 포함하나(관리운영지침 제2조 6항),
- 세부 사업에 따라 사업책임자의 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명칭을 구분하여 사업 수행 책임자를 사업단장으로 한정토록 함

사업명	명칭	변경 처리 방안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단장	사업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단 승인 사항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도대학 총괄책임자	사업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단 보고 사항
우수학과 지원 사업	우수학과 사업 책임자	

※ 사업단장 변경사유 발생 시 대학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재단 측에 보고 또는 승인 요청해야 함

사업단장 및 책임자 변경 처리

사업단장 변경 처리 기준 및 방법

- 피치 못할 신변의 변화나 직위 변화가 발생하여 직의 수행이 명확히 어려운 경우 대학별 사업추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단에 승인 요청, 재단은 별도의 심의 없이 승인. 단, 명확한 사유 파악이 힘든 경우 재단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변경된 사업단장은 기본적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 공고상의 사업단장 자격요건 및 동 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사업단장의 변경은 당연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초 2년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 만큼 발생 시 중간평가에 반영토록 함

사업단장 처리 기준

사유 구분	처리 방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간평가 반영 예외), 이직, 퇴직(정년퇴직 포함) ◦ 타 기관 상근 직책 임명 ◦ 총장, 처장 등 대학 내 주요보직 임명에 따른 변경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참여 제한기간 내에 있는 교수 ◦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사업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단 승인 (당연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의 이유 ◦ 기타(검토 필요한 사유) 	사업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단 내부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단, 동 사업 관리운영규정 제31조 ②-2항에 근거하여 국내 연구년의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단장 유지 가능

장비 구입 심의절차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7항부터 9항('14.8.12)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3.3.20)

심의대상 및 절차

- 심의대상 : 특성화 사업비로 도입하는 3천 만원 이상의 장비

- 심의절차

▶ 3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도입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

연구재단 심의 실시

▶ 1억 원 이상 장비도입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승인

연구재단 심의 실시 → 장비도입심사평가단 최종심의

- 승인 및 구매 이후 NTIS 에 기본사항 등록

▶ 구매 후 30일 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후 재단에 장비정보등록증 제출

※ 지역전략 및 국제화 유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단에서 도입하는 장비에 적용

※ 대당 단가가 1억 원 미만인 장비를 여러 대 구매하여 총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부분품(모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경우, 부분품의 개별 금액은 1억 원 미만이라도 완제품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

장비 구입 심의절차

변경심의 대상

- 환율변동, 사양조정(보조장치, 부대장비를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30% 이상 금액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상황변화로 인한 최신장비 필요,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 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연구)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기타 유의 사항

- ※ 연구장비 도입 심의는 약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 - 구축일정 최소 2개월 이전에 심의 요청
- ※ 사업단(또는 대학)은 대학의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단으로 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안건표준 양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송부